

의안번호	2218790
의 퇴 인	김문수 의원
회 답 일	2026. 5. 7.
추 계 번호	26E249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1조의3 (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	○ 지방대학*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－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, 10만원 초과분은 15%, 1천만원 초과분은 30% 세액공제 － 참고로 현재 대학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* 대학 인증·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	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1조의3(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,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가 증가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자 수 및 기부자별 기부금 납부액 등이 필요하지만, 이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 - 「국세통계연보」는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공제인원 및 세액공제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기부금 대상처별로 구분된 자료는 부재함
 - － 국세청 문의 결과, 전체 기부금 공제대상인원 및 세액공제액 등 정보는 관리하고 있으나, 대학 관련 기부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범주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회신

※ 「국세통계연보」 상 2024년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금액·인원수:
(근로소득세) 1,255억원/635.4만명, (종합소득세) 4,665억원/144.2만명

-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「2025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」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립대학의 교비회계 기부금수입은 1,544억원 수준으로 파악되지만, 동 자료는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수치이며, 기부인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추계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